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6호로 2023년 9월 6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신설 및 추가함으로써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0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9. 11. ~ 9. 1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확대 및 추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3호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신설함.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10호에서는 구청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추가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30m 이내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복지 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 구역” 및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현행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30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0미터는 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며,
- 본 조례안에서 30미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 구역¹⁾” 및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 판례²⁾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본질로 하는 기본권이어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시되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당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가 비록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1) 법제처에 자치입법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통해 조례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008)

2)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2003헌마457 전원재판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않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판결 내린 바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되 흡연권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인 바,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

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

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시행. 2003.4.1.)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 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

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3. 4. 1.]